

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2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)

- '2025년 12월 31일'에서 '2030년 12월 31일'로 연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6. 5. ~ 6. 2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행정국 인력개발과 최준호 (☎ 2133-5771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기금운용관으로 한다”를 “기금운용관이 맡는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해당년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기금의 설치) <u>시장</u> 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 안정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	제2조(기금의 설치) <u>서울특별시시장</u>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30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<u>기금운용관</u> 으로 한다. ② · ③ (생략)	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-- <u>기금운용관</u> 이 맡는다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 1. 정기회의: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, 다음연도의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<u>해당년도</u> 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함. 2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<u>해당연도</u> ----- -----. 2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</u>

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
따른다.

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

4. 작성자

행정국 인력개발과 주무관 최준호(02-2133-5771)